

편입학규정

1997.03.01.제정	1998.07.01.일부개정	1999.03.01.일부개정	1999.08.01.일부개정
2000.03.01.일부개정	2000.07.10.일부개정	2001.03.01.일부개정	2002.03.01.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05.06.02.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10.03.01.일부개정
2012.03.01.일부개정	2012.03.19.일부개정	2020.07.01.일부개정	2025.06.30.일부개정
<u>2025.10.20.일부개정</u>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의거 편입학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편입학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정원 내로 일반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2012.3.19.)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통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12.3.1., 2012.3.19.)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3년제 대학은 졸업(예정)자) (개정 2012.3.1, 2012.3.19.)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예정)자 (개정 2012.3.19.)

② 외국인 편입학 관련 사항은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9., 2025.6.30.)

제2조의 2(모집인원 및 입학학년) ① 편입학 모집인원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모집학과별 인원을 정한다.

② 편입학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모집학과의 3학년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단, **재외국민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25.10.20.)

[본조 신설 2020.7.1.]

제3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별표1]의 인정학점 기준 이내로 한다.** (개정 2010.3.1., 2012.3.19., 2020.7.1., 2025.10.20.)

② **4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3학년 수료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신설 2025.10.20.)

제4조(교육과정 이수) ①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당해학년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2학년도부터 편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② 편입학 후 교과목의 이수능 교육과정 이수표에 의한다.

제5조(편입학생 성적처리) ① 편입학생의 학적부상의 성적기재는 편입학 시 인정학점만을 기재하고 해당성적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편입학생의 성적사정은 편입학 후의 취득성적에 의하며, 전적학교의 성적은 성적사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7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7학년도 2학년 2학기 편입학자 중 전적학교에서 53학점이상 취득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는 학과에 따라 49학점 또는 5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53학점 미만 취득자는 학과에 따라 33학점 또는 3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규정 시행 전의 편입생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지침은 폐지하며, 1997학년도 제1학기 이후에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이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98학년도 이전 편입생과 '99년도 3학년 편입생의 학점인정 최대범위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 <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해당 학년에 적용되는 학년수료 기준학점에 따라 학과별로 2학년 1학기는 33 ~ 35학점, 2학년 2학기는 49 ~ 5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97,'98년 2학년 2학기에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학교에서 49내지 53학점이상 이수자는 본 대학교 교육과정상의 2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49 내지 53학점미만 이수자는 1학년까지의 이수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교육과정이수) 본 개정규정 제3조에 의한 과정 이수 시 이수 인정된 학기 이후에 개설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인정된 학기까지의 학부기초(전공기초)과목의 학점이 해당 학년 적용 교육과정상 정해진 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편입학 이후 그 미달되는 학점분의 학부기

초(전공기초)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시행 전에 편입학한 학생의 편입학자격,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 현재 재적중인 편입학생 전원에게 적용되며, 편입학 학년이후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아래 표에 지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학점을 충족하면 된다.

편입학년(학기)	영역(교과목)			
	영어	컴퓨터	전공기초	전공
2학년 1학기	4학점	컴퓨터 3	6학점	전공 33학점
2학년 2학기	2학점	공학, 조형 - 없음 경사, 건축 - 컴퓨터 3	-	전공 33학점
3학년 1학기	-	-	-	전공 21학점
3학년 2학기	-	-	-	전공 21학점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현재 재적 중인 편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4조제7항의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사항은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1999년도 이전에(1999학년도 포함) 편입한 학생은 아래의 표에 지정된 영역별 이수학점을 편입학 학년 학기 이후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취득하고 졸업학점을 충족하면 된다.

편입학년(학기)	영역별 이수학점	
	전공기초	전공
2학년 1학기	6학점	전공 33학점
2학년 2학기	-	전공 33학점
3학년 1학기	-	전공 21학점
3학년 2학기	-	전공 21학점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 이전 편입학한 학생의 선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명대학 출신 편입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편입학생 학점인정 기준(신설 2025.10.20.)

학과 졸업학점	인정학점		비고
	동일계	비동일계	
130 이하	65	65	전체 학과[간호학과 및 건축학과(5년) 제외]
135 이상	70	70	
간호학과	70	70	
건축학과(5년제)	70	54	